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4. 2.6 공포)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마련(안 제9조제4항 등 등)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을 마련(안 별지 제6호의2, 별지 제10호의2)
- 나. 법률·시행령 개정 조문 및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조문 및 용어(비수도권 시·도지사등) 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정비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1. ~ 7. 1.)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을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57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57조제8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p>&lt;신 설&gt;</p>	<p>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는 <u>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u></p>
<p>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64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③ 영 제64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lt;신 설&gt;</p>	<p>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영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는 <u>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u></p>

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 00.>

##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신청서

(앞쪽)

신청 기관	① 기관명(기관장명)						
	② 공동신청 여부		③ 규제자유특구계획 공고기간				
	④ 규제자유특구계획 열람기간		⑤ 공청회 개최일				
		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⑦ 시·도(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협의일			
규제 자유 특구 계획	⑧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⑨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⑩ 규제자유특구의 면적						
	⑪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⑫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명칭 및 시행기간						
	⑬ 규제자유특구사업자						
	⑭ 규제 특례 내용	규제 특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⑮ 5년간 총사업비 (          억원)	1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2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3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4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5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⑯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⑰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지정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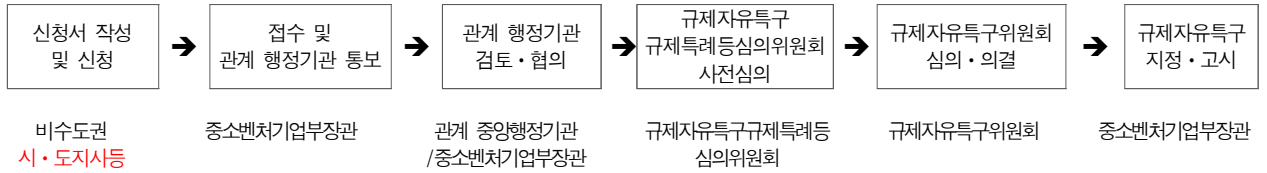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기관 제출서류 (지정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li> <li>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1부</li> <li>3.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다만, 법 제74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합니다) 1부</li> <li>4.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li> <li>5.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li> </ol>
신청기관 제출서류 (지정변경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1부</li> <li>2.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사유서 1부</li> <li>3.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li> <li>4.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li> </ol>
신청기관 제출서류 (지정해제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1부</li> <li>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사유서 1부</li> <li>3.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부</li> <li>4.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li> </ol>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작성요령 / 제출 방식

< 작성요령 >

- ① 기관명: 신청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
- ② 공동신청 여부: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 표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표시
- ③ 규제자유특구계획 공고기간: 규제자유특구계획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④ 규제자유특구계획 열람기간: 규제자유특구계획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⑤ 공청회 개최일: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예시: 년 월 일)
- 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기재
- ⑦ 시·도(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협의일: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지역혁신협의회의와의 협의일을 기재
- ⑧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정하되 "규제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함.
- ⑨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규제자유특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고, 첨부 서류로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해야 함

< 예 시 >

- ○○○도 ○○시 ○○동 ○○번지 일원
- ○○○도 ○○군 ○○면 ○○리·○○리·○○리 일원
- ○○○도 ○○군 ○○면 ○○리·○○리 ○○번지 외 필지
- ⑩ 규제자유특구의 면적: 규제자유특구의 총 면적을 제곱미터(m<sup>2</sup>) 또는 제곱킬로미터(km<sup>2</sup>) 단위로 기재
- ⑪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일부터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⑫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명칭 및 시행기간: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명칭과 시행일부터 시행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⑬ 규제자유특구사업자: 사업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00개 사업자"로 기재(예시: (주) OO 외 12개 사업자)
- ⑭ 규제특례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규제 등
  - 1) 규제특례: 법 제92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 중 적용받으려는 조문 및 특례 내용
  - 2) 규제 신속확인: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주요 내용
  - 3) 실증특례: 법 제86조 및 영 제57조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 4) 임시허가: 법 제90조 및 영 제64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주요 내용
- ⑮ 3년간 총사업비: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후 3년간 투입하거나 해제 전 최근 3년간 투입한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기재 (단위: 억원)
- ⑯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추진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기존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협의 완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중", 별도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추진"으로 기재
- ⑰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사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기재

< 제출 방식 >

별도 요청한 서면자료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및 붙임 서류가 모두 포함된 전자파일[전자문서 첨부물, 시디(CD) 등 저장매체]을 함께 제출

별지 제2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0. 00.>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주요 내용		
소관 부처·기관 및 관련 허가 등 (선택적 기재)	예상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상되는 허가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1부 2.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해당 법조문	처리 절차	서식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5조제1항	<p style="text-align: center;">규제 신속확인 신청</p> <p>서비스(또는 제품)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p>	별지 제2호서식
법 제85조제2항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규제 확인 (규제자유특구 관할 <b>비수도권 시·도지사등</b>)</p> <p><b>비수도권 시·도지사등</b>의 권한 범위에서 규제확인.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p>	
법 제85조제3항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중소벤처기업부장관</p> <p>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신청서 사본과 첨부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p>	
법 제85조제4항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p> <p>허가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p> <p>허가등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검토</p> </div> </div>	
법 제85조제7항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p> <p style="text-align: center;">(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상충되는 등 위원회 심의 필요시)</p>	
법 제85조제6항	<p style="text-align: center;">↓</p> <p>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할 <b>비수도권 시·도지사등</b>에게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b>비수도권 시·도지사등</b>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 즉시 통보</p>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0. 00.>

## 실증특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주요내용		
신청 사유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내용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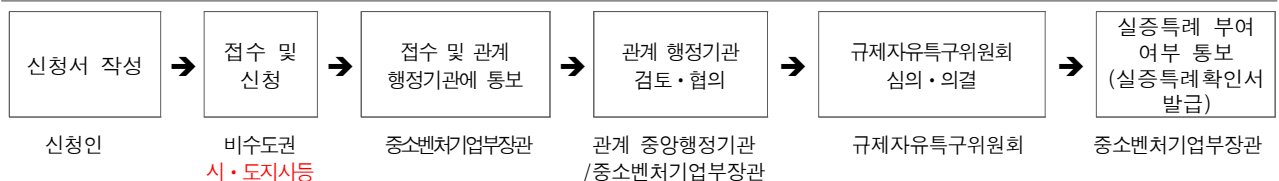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b>비수도권 시·도지사등</b> 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0. 00.>

## 실증특례확인서

제 호	실증특례 확인 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확인내용	명칭	
	주요 내용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제9항, 제87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제9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6호의2서식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4.0.00>

##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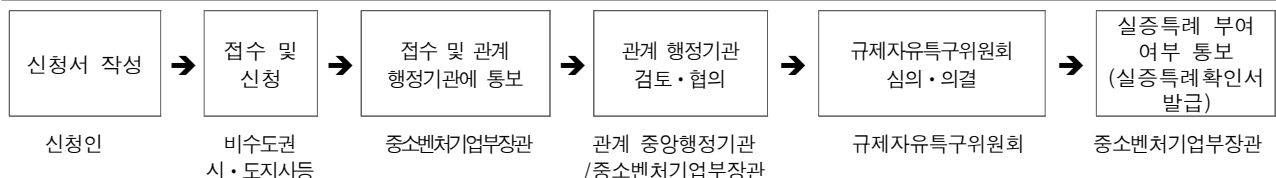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li> <li>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li> <li>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li> <li>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li> <li>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li> </ol>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0. 00.>

##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small>※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small>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와 제품 융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 내용		
기존 실증특례 확인 내용	확인번호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조건	<small>※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small>	
변경 사유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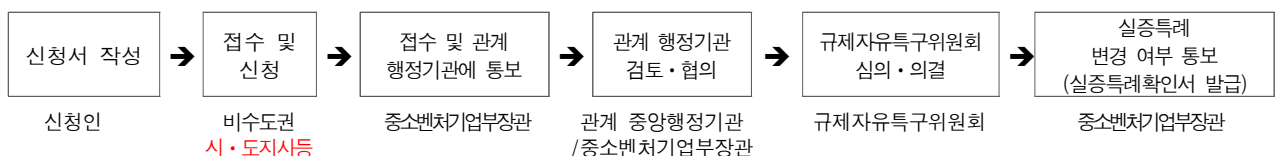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1부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의2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1. 7. 20.>

##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제 호		통보 연월일	
법령 정비 요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규제소관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규제 소관기관/ 담당부서(과)		
	규제 대상 사업 명칭 및 내용		
	규제 법령		
	법령 정비 필요 여부	필요함 [ ]	필요하지 않음 [ ]
검토의견	검토의견 주요내용(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한 소관부처 처리 결과 등)		
그 밖의 안내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b>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b>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의3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4. 0. 00.>

## 법령 정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span style="float: right;">사업자(법인)등록번호</span>
	주소 <span style="font-size: small;">※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span>
	대표자명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span> <span style="float: right;">전자우편주소</span>
실증특례 유효기간 계속연장 희망여부	희망함 [ ] <span style="margin-left: 100px;">희망하지 않음 [ ]</span>
사업 명칭	※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0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시 실증특례가 종료됩니다.
사업 내용	※ 규제와 관련된 사업 내용 기재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정비 요청 법령	※ 구체적으로 기재 (예. xxx법 제00조 제00항 제00호,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법령 소관기관	※ 구체적으로 기재 (예. xx부 xx국 xx과)
규제의 내용 및 정비 필요성	※ 규제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내용 작성(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법령 정비 안	※ 규제법령의 조문 수정 의견 등 기재 (필요시 신·구조문 대비표 등 추가서류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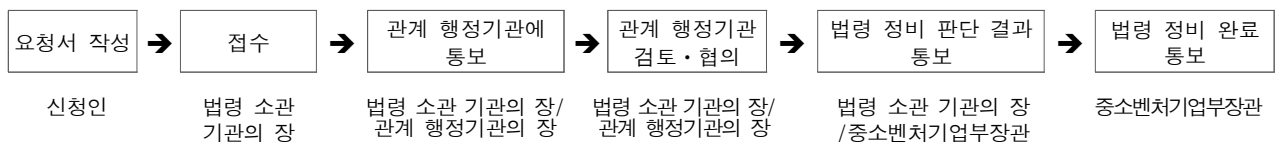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정비 대상 법령 소관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1부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b>비수도권 시·도지사등</b> 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0. 00.>

## 임시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주요 내용		
신청 사유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8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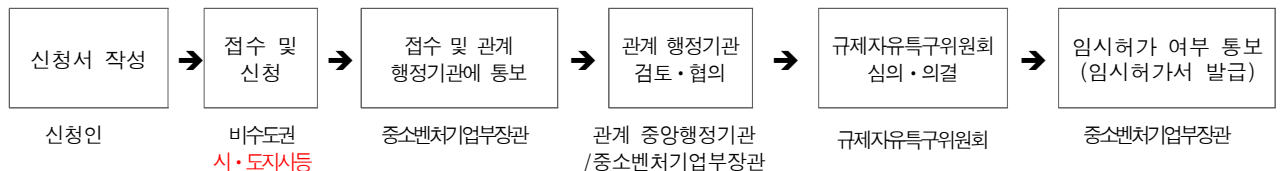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li> <li>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li> <li>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li> <li>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li> <li>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 <b>지사등</b>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li> </ol>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0. 00.>

## 임시허가서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임시허가 내용	명칭	
	유효기간	
	주요 내용	
	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5항, 같은 조 제10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의2서식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4. 0. 00.>

##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 사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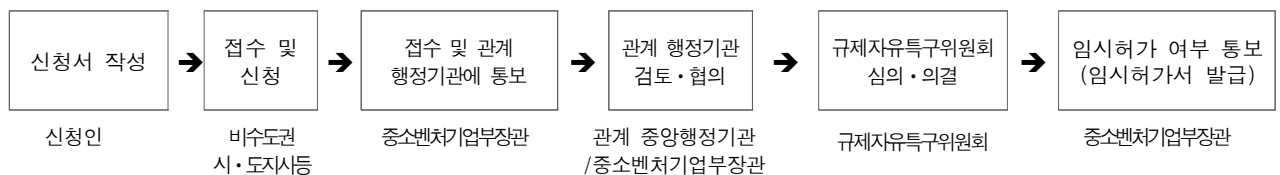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 4.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 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0. 00.>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 서비스 [ ] 제품 [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 기타	
	주요 내용		
기존 임시허가 내용	임시허가 번호	유효기간	
	허가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변경 사유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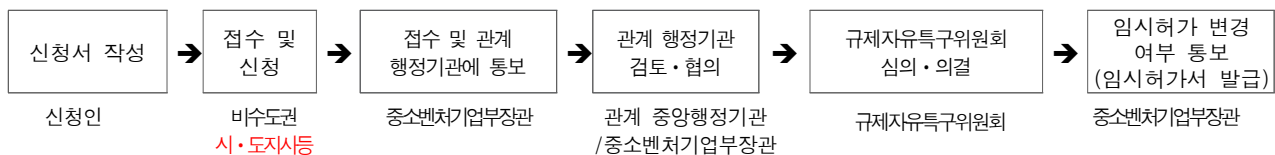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 포함 결과보고서 1부 2.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임시허가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1부
-------------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204